

#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의안 번호	11-60
----------	-------

제출일자 : 2011. 8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제1항 제6호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에 따라 가칭 '상암동 복지센터 건립'을 위한 상암2지구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구가 매입후 민간기관이 시설을 건립하여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한 기부채납 받고자 하여 구의 회 의결을 연고자 합니다.

## 2. 주요골자

- 택지개발 상암2지구는 2,865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위 아파트 지역으로 2010년 6 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9,300여명이 거주하고 있음
- 위 지역은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, 주민 편의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속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태임
- 우리구는 상암2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용지를 매입하고, 민간기관은 시설을 건립하여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한 기부채납 후 일정기간 운영하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여, 민간기관이 투자하는 만큼 예산절감과 우리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

## 3. 가칭) 상암동 복지센터 건립 개요

- 위 치 : 마포구 상암동 628번지 일대(상암택지개발 2지구 내)
- 규 모 : 토지면적 3,215㎡, 건축연면적 10,240㎡(지하2층, 지상4층)

소재지	지목	토 지 공부면적	건 물		토 지 소유자
			규모	용도	
마포구 상암동628 번지 일대	대지	3,215㎡	계	10,240㎡(3,103평)	서울시 SH공사
			지하2층 : 2,400㎡	주차장,기계실	
			지하1층 : 1,600㎡	창고,식당,프로그램실	
			지상1층 : 1,560㎡	로비, 어린이집,사무실	
			지상2층 : 1,560㎡	의료재활,노인교실 등	
			지상3층 : 1,560㎡	직업재활, 의료재활시설	
지상4층 : 1,560㎡	직업재활, 의료재활시설 등				

- 사업기간 : 2011. 10. ~ 2013. 10.
- 건축비 : 18,235백만원
- 추진방식 :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한 기부채납
  - ※ 부지제공은 마포구(9,459백만원)에서 시설건립은 민간기관(18,235백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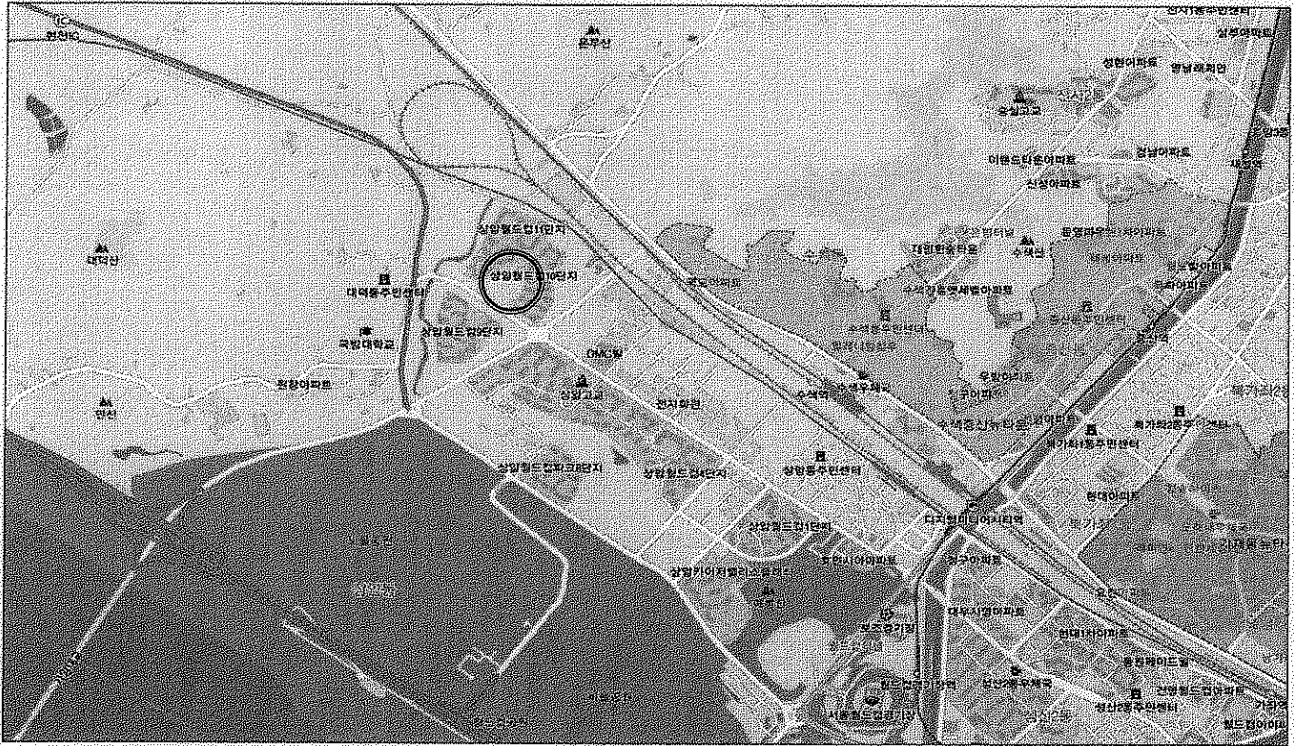
#### 4. 근거

- 지방자치법(법률 제9577호, 2009.4.1) 제39조 제①항 제6호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(법률 제9174호, 2008.12.26) 제10조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1887호, 2009.12.15) 제7조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(조례 제766호, 2009.11.12) 제10조

#### 5. 향후계획

- 상암2지구 부지 매입 계약 체결 : 2011. 10월
- 제3자 제안공모 혹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: 2011. 9월~11월
- 민간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 : 2012. 1월
- 공사착공 : 2012. 4월

## □ 위치도



## □ 현황사진





# 2011년 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(11-2)

( 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 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 득 사 유	비고
	지 목	소 재 지	수 량				
001	토지	마포구 상암동 628번지 일대	1 (3,215m <sup>2</sup> )	9,459,000	2011.08 매매계약 예정	토지 : 보상	금년 추정가액의 10% 계약금 납부후 5년 연납 예정
001	건물	마포구 상암동 628번지 일대	1 (10,240m <sup>2</sup> )	18,235,000 (건축비)	2012. 4월 착공 ~ 20113. 10월 완공	기부채납	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7조 적용

- 주) (1)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취득방법을 표시한다.  
 (2)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, 취득  
 재산 소유자 주소·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
 (3)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.  
 (4) 기타 작성요령은 “양식 11-4”를 참조